

인천광역시 강화군

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군보

제1423호

2026년 7월 13일(월)

- 차례 -

훈령

강화군 훈령 제676호 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행 규정 일부개정훈령 - 1

공고

제2026-1069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- 7

훈령

강화군 훈령(발령)

1. 제 명: 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

2. 개정 이유

-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이용 편의성 제고와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도모
- 업무용 택시의 체계적 운영·관리 및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정비

3. 주요내용

- (안 제1조 ~ 제10조) ‘시범운영’ → ‘운영’으로 개정
- (안 제4조) 이용시간 변경

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행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.

2026년 7월 13일

강 화 군 수 박 용 철

강화군 훈령 제 676 호

붙임: 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행 규정 일부개정훈령 1부.

강화군 훈령 제 676 호

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

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규정”을 “강화군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출장 수행”을 “출장”으로, “시범운영”을 “운영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본청 소속”을 “소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직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용하여야 한다”를 “이용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09:00부터 19:00까지”를 “08:00부터 20:00까지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시범운영의”를 “운영의”로, “시범운영 전반”을 “운영 전반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작성하여 총괄부서”를 “총괄부서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범이용”을 “이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규정</u>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무상 <u>출장 수행</u> 시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신속한 업무수행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강화군이 운영하는 업무용 택시 제도의 <u>시범운영</u>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업무용 택시”란 강화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<u>본청</u>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출장수행 시 이용하는 택시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형택시를 말한다. 2. 3. (생략) 4. “이용자”란 군 소속 <u>직원</u>으로서 여비 지급대상 중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 사람을 말한다. 5. (생략)	<u>강화군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</u> 제1조(목적) ----- <u>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운영</u>----- -----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<u>소속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2.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. 5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이용기준) ① 업무용 택시는 공무상 출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출장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업무용 택시는 근무시간 중에만 이용하여야 하며,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결제시간(호출시간)이 평일 09:00부터 19:00까지인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이용한 것으로 본다.

③·④ (생략)

제6조(지도·감독) ①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용 택시 제도 시범운영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, 업무용 택시 제도 시범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이용요금의 정산) ①·② (생략)

③ 각 부서의 담당자는 이용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서식의 업무용 택시 이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이용기준) ① -----

-- 이용할 수 있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08:00부터 20:00까지 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도·감독) ① -----

----- 운영의 -----

--- 운영 전반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이용요금의 정산) ①·②
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 총괄부서-----

-----.

제10조(이용제한) 총괄부서의 장 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준수하 지 않는 이용자의 소속 부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용 택시 <u>시범이용</u> 을 중지시킬 수 있다.	제10조(이용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이용</u> ----- ---.
--	--

공 고

강화군 공고 제2026-1096호

스마트 버스쉘터 설치 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

스마트 버스쉘터 설치 사업 중 CCTV 설치에 따라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3일

강 화 군 수

1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2. 설치목적 : 버스 쉘터 이용자의 방범/사건·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결
시설물 유지관리

※ 다목적 활용 : 방범, 재난, 무단투기 등

3. 설치(예정)장소

순번	읍·면	설치위치(지번)	장 소	설치대수	비고
1	강화읍	신문리 7-1번지	버스정류장 내, 외부	3	다목적 활용
2	강화읍	관청리 172-2번지	버스정류장 내, 외부	3	다목적 활용
3	선원면	창리 666-8번지	버스정류장 내, 외부	3	다목적 활용
4	화도면	상방리 361-8	버스정류장 내, 외부	3	다목적 활용
5	화도면	사기리 569	버스정류장 내, 외부	3	다목적 활용
6	내가면	고천리 870-4	버스정류장 내, 외부	3	다목적 활용
7	교동면	고구리 산236-6	버스정류장 내, 외부	3	다목적 활용
8	교동면	상용리 605-10	버스정류장 내, 외부	3	다목적 활용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6. 7. 13. ~ . 4. (21일간)
5. 공고방법 : 강화군 홈페이지(www.ganghwa.go.kr)
6. 의견서 제출
 - 가. 제출기간 : 2026. 7. 13. ~ 8. 3. (22일간)
 - 나. 제출내용 : 별첨서식 참조
 - 다. 제 출 처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(강화군청 도로교통과)
전화 : 032-930-3739, 팩스 : 032-930-3640
 - 라. 제출방법 :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청(도로교통과)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

별첨 의견제출서 1부. 끝.

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

사 업 명	스마트 버스쉼터 설치 사업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 소		
설치예정위치	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

CCTV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강화군수 귀하